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권 고 · 통 보

제 목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 및 활용도 제고 미흡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내 용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기계 임대사업자에게 농기계의 구입 및 운송,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임대사업용 농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16년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임대농기계 구입은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농기계를 구입하여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기간을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주요곡물산업육성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 및 농협 농기계은행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군·구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할 경우 2011년도

농촌진흥청에서 제작·배포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가이드」를 활용하여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후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1.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 필요

광주광역시 ○○○○센터에서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제4059호, 2012. 2. 24.)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시·군·구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가이드’의 [부록 6] ‘OO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 조례’를 참고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취지에 맞게 농기계 임대기준을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입고시간은 명확하게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일단위로 임대료를 징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3년도부터 농진청에서 개발 보급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2016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실적을 확인한 결과, 출고일과 입고일의 일단위 개념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과 관계없이 불특정하게 농기계 임대를 출·입고시켜 아래 [표 1]과 같이 실제로 2일을 임대 사용하고도 1일 개념으로 운영한 실적이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1] 2016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실적 현황

연도별	임대건수 (A)	임대일수	당일 출입고	2일출입고 (B)	임대료 (원)	비율 (B/A,%)
계	2,688	3,202	807	1,881	65,450,500	70.0
○○○점	1,946	2,371	584	1,362	50,833,500	
○○지점	742	831	223	519	14,617,000	

2. 농기계 임대 활용도 미흡

「2016년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임대 농기계 구입은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농기계를 구입하고, 사업 단가는 개소당 1,000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기계 구입계획에 반영하고, 지역 영농현황 및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센터에서는 구입한 임대 농기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농업인 교육을 통해 임대 농기계 활용도를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농가에 임대하고 있으나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아래 [표2]와 같이 임대 농기계 활용도를 분석한 결과 총 58기종 259대 중 연평균 사용일수가 5일 미만인 농기계가 25기종 83대(30.5%)이며, 이중 연중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농기계도 4기종 4대(1.5%)에 이르는 등 임대 농기계의 활용도가 저조하게 나타났다.

[표2] 2016년 농기계 임대 사용현황

구분	농기계 보유현황		농기계 사용현황						임대료 납부방법 (농업인 기준)
	보유 기종	보유 대수 (A)	5일 미만			미사용			
			기종	대수 (B)	비율 (B/A)	기종	대수 (C)	비율 (C/B)	
광주광역시 ○○○○센터	58	259	21	79	30.5	4	4	1.5	무통장입금, 신용 카드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

[권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가이드(농촌진흥청)’ 부록의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광주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며’ 내용을 명확하게 추가 보완하여 당초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 취지에 맞게 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농기계 구입 및 운영시 농가 수요조사,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 임대 농기계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